

의안번호	제 40 호
의 결 연 월 일	2010년 10월 일 (제295회)

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박 문 희 의원
발의연월일	2010년 9월 일

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0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10년 9월 일

발 의 자 : 박문희 의원

찬 성 자 : 김봉희·김희수·정 헌·윤성옥·
황규철·김종필

1. 제안 이유

-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업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(안 제1조~안 제4조, 안 제6조~안 제9조, 안 제12조 등)

3. 조례안 : 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5. 예산조치 : 1,413백만원(국비 925, 도비 127, 시군비 297, 자담 64)

6. 관련부서 협의 : 농정국 농업정책과와 협의

7. 입법예고사항 : 본 조례안은 「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농업”을 “농어업”으로, “농업인력”을 “농어업인력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“농업”이란”을 ““농어업”이란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농업이외의”를 “농어업이외의”로, “농업경영”을 “농어업경영”으로, “농업에”를 “농어업에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농업”을 “농어업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농업”을 “농어업”으로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육성·지원계획의 심의) 도지사는 충청북도 농어업·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로 하여금 귀농인의 육성·지원계획을 심의하도록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귀농 정보제공) 도지사는 귀농인의 효율적인 귀농을 위하여 시장·군수에게 다음 각 호를 시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농업경영”을 “농어업경영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호 중 “농업창업자금”을 “농어업창업자금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제2호 중 “농업”을 “농어업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제3호 중 “농업”을 “농어업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4조와 제 25조에 따라 충청북도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<u>농업인력</u>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<u>농업</u>”이란 「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 3조제 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.</p> <p>2. “귀농인”이란 만 5세 이하의 자가 다른 시도(시군포함)에서 1년 이상 <u>농업이외의</u>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으며 <u>농업경영</u>을 목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<u>농어업</u>----- ----- -----<u>농어업인력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“<u>농어업</u>”이란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----- ----- -----<u>농어업이외의</u>----- ----- -----<u>농어업경영</u>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적으로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 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<u>농업에</u>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농어업에----- -----.</p>
<p>3. ~ 4. (생략)</p>	<p>3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<u>농법 제4조와 제9조에 따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귀농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귀농인 지원 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3조(도지사의 책무) ----- ----- -----농어업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4조(귀농인의 책무) 귀농인은 교육, 주택, 창업자금 등 행·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조속히 정착하여 <u>농업·농촌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4조(귀농인의 책무) ----- ----- ----- ----- <u>농어업</u>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육성·지원계획의 심의) 도지사는 충청북도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로 하여금 귀농인의 육성·지원계획을 심의하도록 한다.</p>	<p>제6조(육성·지원계획의 심의) 도지사는 충청북도 농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로 하여금 귀농인의 육성·지원계획을 심의하도록 한다.</p>
<p>제7조(귀농 정보제공) 도지사는 시장·군수에게 효율적 귀농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	<p>제7조(귀농 정보제공) 도지사는 귀농인의 효율적인 귀농을 위하여 시장·군수에게 다음 각 호를 시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교육훈련 지원) ① 도지사는 귀농인이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8조(교육훈련 지원) ① ----- -----농어업경영----- -----.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정착자금 지원) (생략)</p> <p>1.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농업창업자금 및 경영자금 융자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9조(정착자금 지원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-----농어업창업자금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2조(지원의 취소와 지원금의 회수 등) ① 도지사는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귀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,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융자 지원을 받은 후 융자금 상환기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(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)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.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였을 경우 4. ~ 5. (생략) 	<p>제12조(지원의 취소와 지원금의 회수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-- -----농어업----- 3. <u>농어업</u> ----- ----- 4. ~ 5. (현행과 같음)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제3조 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농어업"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.

가. 농업: 농작물재배업, 축산업,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나. 어업: 수산동식물을 포획(捕獲)·채취(採取)하거나 양식하는 산업,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

2. "농어업인"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.

가. 농업인: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

나. 어업인: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·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

3. "농어업경영체"란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.

4. "생산자단체"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.

5. "농어촌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.

가. 읍·면의 지역

나.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, 농어업 관련 산업,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물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

제4조 (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·소비자 등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,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,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의 소득안정,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은 농어업·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·공급하고, 생산성 향상과 농어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생산자단체는 농수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, 농어업경영의 효율화,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·공급하고, 식품산업 및 농어업·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소비자는 농어업·농어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수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5조 (농어업·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)① 농림수산식품부에 중앙 농어업·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, 시·도에 시·도 농어업·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, 시·군 및 자치구에 시·군·구 농어업·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어업·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기본 계획, 시·도계획 및 시·군·구계획, 그 밖에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제17조에 따른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
3. 수산 분야 등의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

③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어업·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5조 (후계농어업경영인의 육성)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미래의 농어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(後繼農漁業經營人)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.